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6-166호 (2006. 3. 6. ~ 2006. 3. 25.)
- 의견 제출사항 없음

나.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의 규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5. 8. 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 체결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토록하여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 본 제정 조례의 검토 결과 상위 법령과 표준안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제12조의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우리군에서 일반공사 5억원, 전문공사 2억원으로 정한 금액이 적정한지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

- 문 : 계약심의를 단위 계약을 심의하는 것인지 ?
- 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억원 이상의 계약 체결시 계약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문 : 조례안 제7조의 계약심의회대상은 일정 금액(30억원)이상이면 전부 심의대상인지, 군수가 필요에 따라 혹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에만 적용할 것인지 ?
- 답 : 30억이상 공사 계약시 전부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문 : 연중 30억이상 계약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 답 : 태풍이나 재해가 없을 때에는 1년에 1~2건 정도입니다.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2006. 6. 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